

-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 6. 전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 7. 전년도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 8. 전년도 공기업 운영 상황
- 9.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③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27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은 구정종합자료실 및 재정운영상황공개와 관련된 부서에 비치하여 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주민공개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 2.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 3.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29조(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 구청장의 권위·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임 구청장은 제27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3. 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2월 2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2월 28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0년 3월 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가. 개정이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함.

나.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경조사 휴가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와 형제자매만 허가	- 삼촌 이내의 모든 친족사망시 경조사휴가 허가 - 부모사망·탈상시 휴가일수 연장
출산 휴가	- 출산휴가는 60일 이내에 부여할 수 있는 임의규정	- 출산휴가를 의무 규정화
보건 휴가	- 매 생리기마다 1일 부여	-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부여
육아 시간		-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 부여
퇴직준비휴가	-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공무원에게 허용 - 경력직·별정직공무원	- 조기 퇴직공무원에게도 퇴직준비휴가 허용 - 경력직·별정직·고용직(포함)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30일 이상의 휴가시에만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	- 경조사휴가시에도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만)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조건을 남녀평등이념에 맞도록 개선하고 고용직공무원에게도 퇴직준비휴가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제23조5호는 법령개폐에 따라 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정비하고, 제24조의 여성공무원의 60일 출산휴가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하며, 일반직과 별정직공무원에게만 허용했던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하는 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며, 제25조에서는 남녀평등이념에 맞도록 공무원 경조사별 특별휴가의 친족범위대상을 확대 조정한 사항으로써 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휴가업무운영지침과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
----------	-----

제출년월일 : 2000. 2. 2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경조사 휴가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와 형제자매만 허가	- 삼촌 이내의 모든 친족사망시·경조사휴가 허가 - 부모사망·탈상시 휴가일수 연장
출산휴가	- 출산휴가는 60일 이내에 부여할 수 있는 임의규정	- 출산휴가를 의무 규정화
보건휴가	- 매 생리기마다 1일 부여	-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겸진을 위하여 매월 1일 부여
육아시간		-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부여
퇴직준비휴가	-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공무원에게 허용 - 경력직·별정직공무원	- 조기 퇴직공무원에게도 퇴직준비휴가 허용 - 경력직·별정직·고용직(포함)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30일 이상의 휴가시에만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	- 경조사휴가시에도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휴가업무운영표준지침
-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 [시인사 12100-107(2000. 1. 13)]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나.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별첨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7항(중전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 제8항(중전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5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관련)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 (현행과 같음)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5.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u>	5.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u>	5.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u>
6.~8. (생략)	6.~8. (현행과 같음)	6.~8. (현행과 같음)	6.~8.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⑥(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⑤, ⑥(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⑤, ⑥(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을 때			
2. 정부포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포장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정부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현행	개정 (안)
<p>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u>1회에 한하여</u>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p> <p>⑦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u>명예퇴직</u>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u>조례 또는 규칙으로</u>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⑧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조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u>재직기간중에</u>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p> <p>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u>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u>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u>조례로</u>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⑨(현행 제8항과 같음)</p> <p>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u>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한다.</p>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3. 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2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2월 2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0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0년 3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추진감)

- 가. 개정이유
 -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공포(건설교통부령 제209호, '99. 9. 2일자 관보 제14296호)와 관련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